

질문 6 수첩 취득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미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지급 수당이 있는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망한 달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사망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한 사람과 상속인과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질문 7 다시 새롭게 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日本) 국외 또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수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시 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면 일본에 와서 현재 머드르고 있는 도도부현 지사(히로시마시 및 나가사끼시는 해당시의 장(長)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국외에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시에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의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8 정성령(政省令)개정하는 중에 일본에 와서 수당 지급신청을 하고 정성령(政省令) 개정 전에 출국한 사람에 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성령(政省令)개정 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취급을 하며 수당의 지급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출국하는 날의 달까지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수당 지급 신청을 한후 인정을 받기 전에 출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수당 지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출국한 후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중에 일본에 와서 1월 중에 일본을 떠난 경우

3월 이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2월)분부터 거슬러 올라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분의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지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월 중에 일본에 와서 2월 중에 일본을 떠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2월)분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3월 이후는 개정정성령(政省令)에 따라 수당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2월 분이후 매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2월 중에 일본에 와서 2월 중에 일본을 떠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3월)이후 매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